

운영규정 개요

I. 기본정보

기관명	파주시민국제주야간보호센터	설치일자	2025.08.01
주소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06-2 파주시민국제주야간보호센터		
급여종류	주.야간보호센터	정원	49명
대표자	이자옥	전화번호	031) 945-5900
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장기요양인정서를 소유하고, 데이케어센터 이용을 원하는 자.		
배상책임보험	DB손해보험: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II 가입		

II. 직원현황 및 근무체계

직군	직 위	근 무
관리직	시설장	센터총괄 /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 / 이용자 및 가족의 관리보호 / 센터 운영에 관한 원칙 수립 / 운영예산 및 재무회계 / 고충상담
전문직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 수급자 상담 및 관리 / 간담회,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요양보호사	이용자 건강 및 여가생활지도, 위생지도 / 물품관리 / 프로그램 자료 제작 지원 /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사회적 서비스 전달 / 이동서비스(송영) 지원
	간호조무사	이용자 건강관리 / 의무실 운영 및 약품관리 / 질병예방 및 처치 / 기록보관 및 보고 응급상황 대응 / 감염예방 및 교육 / 이동서비스(송영) 지원
	조리사	급식 조리 및 취사 / 주방 위생점검, 위생상태 유지 / 요리프로그램 지원
기능직	운전원	이동서비스(송영) 및 차량관리

II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행정기관 허가정원 49명
이용자 모집방법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센센터 웹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aju_gookje)를 통한 홍보/ 전화, 방문 등 상담 / 이용자 소개/ 현수막/ 리플렛과 소식지 등 홍보물 배포

IV.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여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비급여항목	중식 3,700원, 석식 3,700원, 간식 1,000원을 본인부담금 청구 시 함께 청구한다.

V.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 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1. 보호자는 입소계약 시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인정서 사본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3)주민등록등본 원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2. 보호자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긴급 상황에 1시간 이내에 대처할 의무를 갖는다. 1) 응급상황발생 시 1시간 이내 대처의무이행 불가능 시 본 센터에 응급사항조치 권리를 부여한다.

2) 수급자에게 부여한 응급상황 조치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보호자는 본 센터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호자의 책무와 책임을 갖고 신병을 인수한다.

4.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 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 요구시 이용자 본인의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6.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7.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8.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9.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VI.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 서비스 실시 중에 본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자의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상황 및 화재, 도난 사고에 의한 수급자가 받은 손해(재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센터는 수급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지연으로 인한 사고에 배상책임을 진다.

2) 센터는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배상책임을 진다.

3) 센터는 사고발생시 수급자의 보호자와의 입회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센터의 책임이 있을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 면책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서비스 중 자연사 하였을 경우.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면책범위는 보호자와 센터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실 내 비치된 [운영규정] 참조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장기요양급여 종류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단위 : 원)

등급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등급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3시간미만	1등급	32,520 원	4,878 원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7,770 원	10,166 원
	2등급	30,100 원	4,515 원		2등급	62,780 원	9,417 원
	3등급	27,790 원	4,169 원		3등급	57,960 원	8,694 원
	4등급	26,530 원	3,980 원		4등급	56,380 원	8,457 원
	5등급	25,260 원	3,789 원		5등급	54,780 원	8,217 원
	인지지원등급	25,260 원	3,789 원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8,217 원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0,650 원	6,098 원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4,660 원	11,199 원
	2등급	37,630 원	5,645 원		2등급	69,160 원	10,374 원
	3등급	34,740 원	5,211 원		3등급	63,900 원	9,585 원
	4등급	33,160 원	4,974 원		4등급	62,290 원	9,344 원
	5등급	31,580 원	4,737 원		5등급	60,710 원	9,107 원
	인지지원등급	31,580 원	4,737 원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8,217 원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4,490 원	8,174 원	13시간 초과	1등급	80,060 원	12,009 원
	2등급	50,470 원	7,571 원		2등급	74,170 원	11,126 원
	3등급	46,590 원	6,989 원		3등급	68,520 원	10,278 원
	4등급	45,000 원	6,750 원		4등급	66,930 원	10,040 원
	5등급	43,400 원	6,510 원		5등급	65,350 원	9,803 원
	인지지원등급	43,400 원	6,510 원		인지지원등급	54,780 원	8,217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2025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증가액	236,500 원	213,800 원	29,900 원	28,800 원	25,400 원	13,700 원

★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되며, 이용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율

1.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식비 종류	점심(중식)	저녁(석식)	간식(오전/오후)	공휴일 식비
금액	3,900원	3,900원	2,000원	7,000원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세부기준
 - (1)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2)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비누,수건,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3)각종 프로그램 비용: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